



# Q & A

산업자원부 질의/회신

LPG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산자부가 회신한 내용을 게재한다.

## 사업소경계 관련 질의

**Q** LPG법 별표3 1.가.(1)안전거리 규정에 의거 LPG충전시설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의한 거리이상 유지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공공공지로된 부지의 그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볼 수 있는 지?

공공공지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축물의 설치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옥외체육시설 등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토록 되어있어 법상 제1,2종 보호시설이 설치될 수 없으므로 철도, 도로 등과 동일하게 적용함이 안전거리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1.29)

**A** LPG법시행규칙 별표3에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근본적으로 동 지역에는 건

축물의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인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기반시설인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절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 확보를 위한 지역이며 동 지역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형물, 옥외생활체육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공공공지를 사업소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5)

### 충전소내 건물설치 가능여부

**Q** LPG법시행규칙 중 시설기준에 충전설비로부터 안전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바 금번 본인이 충전소 인근 토지에 카센타를 건립함에 있어 충전설비로부터 21m이내에 저촉되는 부지는 카센타 부지로 활용하고 50m이내 구역에 카센타건물 80㎡를 신축코자 함.

이럴경우 카센타건립이 가능한지, 또한 충전소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 궁금하며 참고로 21m이내지역에는 시설물 및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았음 (2.25)

**A** LPG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LPG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등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소정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소경계내의 부지는 충전사업용도로 허가받은 것이므로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그러나 연면적 80㎡의 카센타 건물은 동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소경계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함 (3.5)

### 프로판충전기의 부탄 전환 가능여부

**Q** LPG법 제3조(사업의 허가등)에 관련하여 LPG[프로판(용기)부탄(자동차)]충전업 허가를 득하여 프로판충전기 6대를 가동중에 있으나 부탄을 충전(13KG 용기 등)을 할 수가 없으므로 프로판 충전기 6대중 1대를 부탄으로 전환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부탄용 배관을 약 15m정도의 증설이 필요한데 어떠한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1.28)

**A** 프로판용기충전기 6대중 1대를 부탄용기(13kg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기)충전기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시설변경 없이 배관의 길이만 15m 증설하는 것은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배관의 연장이 20m이상의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임), 안전거리는 허가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면 됨.

다만 변경되는 시설의 관계 도면 및 서류를 허가관청 및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기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상의하시기 바람. (2.4)

### 자동차충전소 허가

**Q** 소유하고 있는 부지로는 사업소 및 충전시설로부터의 안전거리 확보가 불가능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동의를 받아 사업허가를 득하려고 할 경우 본 사업허가 신청 면적을 사용동의를 받은 타인의 토지까지

(안전거리확보가능지역)로 해야하는지 (1.22)

**A** LPG충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LPG법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LPG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소정의 안전거리(24m이상)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전사업소 경계내의 부지는 자사의 부지중 충전사업소에 귀속된 부지 및 타인의 부지중 법률상 지상권, 임대차, 사용대차 등을 통하여 사업소 부지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사업소경계내에 포함된 부지(바다·하천·호수·도로 등 제외)는 사업허가 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1.29)

### LPG충전소 부지 변경허가

**Q** 경기도 평택시에 2001년 1월 16일자로 LPG충전사업(자동차)부지로 4,545㎡의 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충전소 부지의 전면이 도로 용지로 393㎡가 분할되어 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임.

따라서 충전소 부지는 4,152㎡로 감소되어 있는 관계로 부지면적 축소로 인한 변경허가 대상인지, 또한 변경허가 대상이라면 허가시점의 법률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 시점의 법률을 적용받는지 (2.9)

**A**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등 LPG법시행규칙 제4조에 정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소의 부지만 일부 축소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임. 다만, 안전거리 등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시행규칙 별표3에 정한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함 (2.20)

### LPG용기충전사업중 자동차충전시설 병행 관련

**Q** 1989년 8월 LPG용기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프로판 용기 충전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동차 용기충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여 기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 탱크 4기중 1기(50톤용량)를 부탄전용탱크로 변경하여 부탄 충전사업허가를 변경허가형식을 취하여 취득하려고 함.

가스안전공사 문의결과 이 경우는 현행 가스법의 적용을 받아 현재 허가가 용기충전(프로판)에만 국한하여 충전할 수 있는 허가이므로 용기충전(프로판)시설의 폐쇄 또는 증설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용기충전(프로판)시설을 자동차용기(부탄)충전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기존의 용기충전시설은 무시하고 자동차용 용기(부탄)충전시설만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안전거리가 나오는지 또는 기타 현행법에 적법한지의 여부 등을 판단해서 신규허가 기술검토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본 사업자는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하여 기술검토를 필하게 되었는데 본 허가 신청이 신규 또는 변경허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2.14)

**A** LPG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충전시설을 갖추어 LPG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으면 될 것임 (2.20)

## 충전사업의 범위

**Q** LPG법제8조제1호별표3 1.시설기준 가.용기충전시설 (14)충전시설의규모 등의 (가)의 내용중 [용기내장형 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행법상 난방기용 용기내장형 부탄가스는 자동차 충전사업 허가의 부대시설인지, 아니면 용기충전사업 허가의 부대시설인지. 자동차충전소에서 난방기용 용기내장형 부탄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지 (1.28)

**A** 적시하신 내용은 용기충전시설의 규모에 있어서의 단서조항이며,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용기는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충전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음 (1.29)

##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범위

**Q** 자동차충전소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 현재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비방폭구조로 관련법에 의거 8m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1. 유선단말기

- 전원 및 통신선을 현장 설치점까지 방폭 구조 시설을 하여 현장에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단, 단말기는 비방폭 구조임.

### 2. 무선단말기

- 요즘 시중에 무선단말기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음. 이는 핸드폰과 동일한 구조로서 배터리를 장착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선단말기의 현장비치 사용이 가능한지. 무선 단말기도 관련법에 의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지 (1.15)

**A** LPG법시행규칙 별표3제1호가목 (6)나)의 규정에 의거 가스설비중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는 구조여야 하며, 가연성가스시설의 위험장소분류 및 방폭전기설비의 선정·설치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에 의거 충전장 및 가스설비 주위 8미터이내는 제2종 위험장소에 해당되는 바,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충전장 및 가스설비로부터 8미터 이상 거리 유지 또는 방폭구조인 것으로 하여야 함 (1.21)

## LPG판매점 집단화 및 공동화

**Q** LPG판매점의 시 외곽지 이전의 차원에서 LPG판매점을 위한 정책사업중 공동화와 집단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해석을 알고싶고, 만약 공동화로 되었을때 기존 판매소의 용기저장실이 20평이상으로 되어있고 현재 시조례로 LPG판매점 허가 조건 중 용기보관실이 6평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기존 판매소가 공동화 창고로 이전할 시 각자의 허가권이 인정되는지 (2.5)

**A** LPG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각 판매사업자는 법령 및 허가권자가 정한 면적이상의 용기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2이상의 사업자가 하나의 용기보관실을 공동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2.14)